

2023년 제8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399-13(공동주택(아파트)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3. 9. 20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송도랜드마크 유한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399-13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58,466.7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1,376.04㎡	건폐율	19.21%	층 수 지하 : 2층 지상 : 26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2동
	최고높이	79.50m	용적률	165.08%	연면적 합계 155,152.48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구조)분야	○ 모든 주동의 기초두께가 지하2층~지상26층(28개층)지하 기초 두께 대비 약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하중조합 재확인 후 두께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. ○ 구조계산서 p.84~107 확인 결과, 조치계획서와 동일한 스케일업 팩터를 가진 동이 없으며, 사전검토의견 답변에 첨부된 하중조합 이미지에 x방향 스케일업 팩터가 1.192가 아닌 1.0이 입력되어 있으므로, 전체동 하중조합 및 결과값 재확인 바람. ○ 아파트와 지하주차장 시공 후 근린생활시설 동의 기초를 시공한다고 하여 마이크로 파일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, 이에 대한 적용사유를 제시바람. ○ 심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바람.
	(토질)분야	○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바람.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